

벤엘찬양대 회칙

제 1조(명칭)

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벤엘찬양대라 칭한다.

제 2조(소속)

본회는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내에 둔다.

제 3조(목적)

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1.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.
2.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 대원의 신앙 및 음악성, 자질을 높인다.

제 4조(자격)

찬양대원의 자격은 본 교회 운영규정 제 29조에 따라 벤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있고 그 자격은 벤엘 찬양대 대원 임명받은 년도에 한한다.

(임명이후 입대는 교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)

제 5조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벤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된 자가 된다.

제 6조(자격상실)

다음 각항의 해당자는 대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1. 8주 무단결석자 (단,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
2. 타 교회 이적자
3. 일신상의 이유로 대원을 사퇴한 자
4. 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의한 자
5. 출석률 70%에 해당하는 자

제 7조(권리)

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발언권 및 결의권이 있다.

제 8조(의무)

본 회 회원은 교회에서 요구한 예배 및 훈련,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9조(회비)

본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하여 납부한다.

제 10조(연습)

본 회 회원은 신령한 예배와 공교한 찬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연습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

1. 주일 예배 전 찬양연습과 예배 후 연습에 참석.
2. 주중 찬양연습에 참석.
3. 필요시 특별찬양 연습을 소집할 경우 참석.

제 11조(경조금)

본 회의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출은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1. 결혼시 : 10만원(본인), 5만원(자녀)
2. 장례시 : 10만원(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)
3. 병문안 : 1주일 이상 입원시 5만원(본인)
4. 자녀출산 : 10만원
5. 개업시 : 5만원(본인)

제 12조(부칙)

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와 찬양위원회, 대장단의 협의에 준한다.
2.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